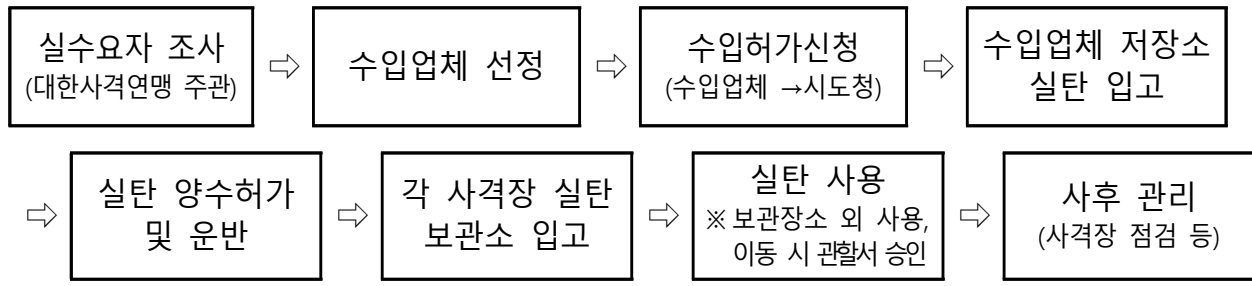


사격선수용 실탄 관리 지침

사격선수용 실탄 유통의 전 과정(운반·사용 등)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, 대한사격연맹·사격장관리자 등 관계자와 협업하여 촘촘한 실탄 관리체계 구축

□ 사격선수용 실탄 유통 프로세스 및 문제점

〈 사격선수용 실탄 유통 주요 프로세스 〉



□ 문제점

- 실탄 운반·입고 시 신고 절차가 불명확하고, 입고 확인 미흡
- 사격장 내 실탄 출고·사용 시 사격장관리자의 관리(수량 확인 등) 미흡
- 사격장 간 실탄 이동 시 발송 수량과 도착 수량의 일치 여부 미확인

□ 사격선수용 실탄 관리 세부 지침

① 실탄 양수·운반

- (양수허가) 대한사격연맹이 양수인(선수)을 대표해서 실탄이 입고될 각 사격장 관할 경찰서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은 유지하되, 신청 시 각각의 양수인과 양수인별 실탄 수를 기재한 목록과 선수등록증 사본 첨부
- (운반량 준수) 대행업체에 입고된 실탄 양수는 미리 일시를 정하고 대한사격연맹 입회하에 진행하며, △양도·양수 허가 공문상 실탄 수량과 실제 출고량 일치 여부 △차량당 적재 실탄 10만 개 이하 여부 확인
- 대행업체와 대한사격연맹에서는 운반 당일 공문상 수량과 실제 출고량을 확인, 이상 유무를 허가 관서에 유선·문자 등으로 통보하고,
※ 이상 없을 시,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(이하 지침에서도 모두 동일)

- 차량당 적재하는 실탄이 10만 개를 초과하는 경우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화약류 운반신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안내

② 실탄 입고 · 보관

- (입고 확인) 운반된 실탄은 입고 예정 사격장관리자가 반드시 현장 입장하여 사전 양수 허가된 수량에 맞게 입고되는지 확인 후 허가관서 통보
- (실탄 보관) 사격장에 입고된 실탄은 소유자별로 분리 보관하고, 각 소유자별 독립된 실탄 양도 · 양수 대장 및 사용 대장을 두어 관리(팀별 통합관리 불가)
 - ※ (관련 근거) 「총포화약법」 제6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6
 - ※ (양도 · 양수 및 사용대장 서식) 「총포화약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 사용

③ 실탄 사용

- (출·입고 대장 입력) 총기사용자(사격선수)는 총기 · 실탄 사용을 위해 출고할 경우 소유자별 실탄 사용 대장에 정확히 기재하고, 사용 후 총기 및 남은 실탄 또한 반드시 입고하고 그 수량을 기재
 - ※ 잔탄 개인 소지 시, 실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포화약법 제71조 제1의3호에 의해 5년 ↓ 징역 또는 1천만원 ↓ 벌금으로 처벌 가능
- (사격장관리자 확인) 사격장 관리자는 총기사용자가 출 · 입고 시 반드시 함께 입장하여 실제 출 · 입고 내용과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

④ 사격선수용 총기 및 실탄 관리전환

〈 관리전환의 개념 〉

각 사격장에서 보관 중인 사격선수용 총기·실탄을 △사격대회 △대규모 연습 등을 위해 다른 사격장으로 일시적으로 옮겨 보관 및 사용하는 것

- (관리전환 신고) [붙임 1] 양식을 활용, △선수 목록 △선수별 관리전환할 총기 및 실탄 수량 △운반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하여 출고지 사격장과 목적지 사격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신고
 - ※ 기존처럼 출고지 관할 경찰서 공문만으로 왕복 이동 불가
 - ※ 출고지 사격장 → 입고지 사격장 : 출고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
 - ※ 입고지 사격장 → 출고지 사격장 : 입고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

- (변경 신고) 기존 신청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 확행
 - ※ 신청한 수량보다 출고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변경 신고 후 출고 진행
- (관리전환 신고 수리) 관할 경찰서는 △관리전환 목적 및 기간 △총기·실탄 목록 등 확인하여 이상 없을 시 관리전환 신고 수리
 - ※ 대회 종료 후 이동 시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전화 등으로 신고사항을 우선 통보하고, 사격장관리자로부터 [붙임 2] 출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조치 후 지체없이 사후 공문(출고확인서 첨부)으로 신고
- (입고 확인) 운반된 총기·실탄은 입고 전 사격장관리자가 관리전환 신고·수리된 수량에 맞게 입고하는지 확인하고 허가관서 통보
- (대회 개최 시) 사격장관리자 확인과 별개로, 가급적 대회 전반을 진행하는 단체(대한사격연맹 등)에서도 입고 현황 추가 확인
 - ※ 단, 사격장 무기고의 수용량을 고려하여 공기총은 대회 참가를 위한 경우에 한해 책임자를 지정한 후 재보관 시까지 한시적 개인 보관을 허용

⑤ 사용된 탄피의 처리

- 사격 후 남은 탄피는 최대한 수거하여, 사격장관리자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보관
- 폐기할 시에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처리(압축·용해 등)

⑥ 허가·수리 및 사후 관리

- 양도·양수허가, 관리전환 신고 수리 시 △실탄 운반량 준수 및 △출·입고량 변경 시 신고 확행 등 신청인 준수 사항을 조건으로 명시
- 위반 시 사격장 영업 제한, 총기·실탄 관리전환 금지 등 조치 적극 검토
 - ※ (관련 규정) 「사격장안전법」 제18조제2항 및 제19조, 「총포화약법」 제14조의2제3항
- 사격장 관할 경찰서는 반드시 월 1회 이상 점검
- 사격장 점검 시, 관련 허가·승인 공문과 소유자별 실탄 사용 대장을 대조하여 총기 및 실탄 유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

□ 행정사항

○ 경남 사격연맹회장

- ▶ 수입 대행업체 실탄 출고 시 △연맹 주관 대회 개최 시 총기·실탄이 제대로 출·입고되는지 확인
- ▶ 지침 주요 내용에 대해 사격관계자(감독·코치·선수 등)들에게 홍보,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

○ 창원국제사격장

- ▶ 실탄 유출이 없도록 사격장관리자가 실탄 입·출고 시 반드시 현장 입장 하여 확인
- ▶ 사전에 통보된 공문과 대조하여 허가(승인)된 수량과 실제 출·입고 수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점검

○ 총기·실탄사용자(사격선수)

- ▶ 실탄 양도·양수, 총기 및 실탄 출·입고 시 양도·양수 및 사용 대장 기재 철저
- ▶ 사용 후 남은 실탄(잔탄)은 개인보관 불가, 반드시 사격장에 입고